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8063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보험 주식회사
피 고	○○○
소 제기일	2004. 11. 12.
판결 선고일	2005. 12. 28.
쟁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입원치료 중 소화성궤양 치료를 한 경우 그것이 소화성궤양의 치료를 직접 적 목적으로 입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고 승소 <input type="checkbox"/> 원고 패소 <input type="checkbox"/>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상법 제737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노블레스종합보험IV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피고는 2004. 6. 17. 12:10경 피고 소유의 전남 90가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중저마을 앞 노상을 강진읍 방면에서 마량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노건의 정원수를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고가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2004. 6. 17.부터 2004. 8.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04. 10. 29.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의해 상해의료비, 상해입원비 등 합계 금 7,950,000원을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강진사랑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2004. 7. 13. 내 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 한편, 위 보험계약상 ‘과로·스트레스관련질병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① ‘과로·스트레스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7대 질병(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한다. ②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과로·스트레스관련 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과로·스트레스관련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과로·스트레스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이하 소화성궤양이라 한다) 치료는 위 입원기간 중 부수적인 치료에 불과하여 소화성궤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입원치료시 소화성궤양의 증상이 악화되어 상해와 병합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약관에 의해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장기간병자금, 요양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입원치료 중 소화성궤양 치료를 한 경우 그것이 소화성궤양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입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과로·스트레스관련 특정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입원이 필요하며,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만을 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피고의 강진사랑병원 입원기간 중 내시경 검사일 이후의 입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소독치료가 필요한 사실, ② 위 혹은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궤양의 치료는 출혈, 위 개구부 폐쇄 등의 합병증 병발시 또는 심한 동통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의 적응증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약물 투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사실, ③ 강진사랑병원 의사 이문종이 작성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2004. 6. 29.부터 2004. 8. 14.까지 47일간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열상'으로 인해 강진사랑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④ 피고의 강진사랑병원 내과 진료와 관련한 진료비총액은 금 1,212,046원인데 그 중 비급여인 입원비가 금 980,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치료와 관련된 항목은 투약 및 조제료 금 100,201원, 주사료 2,996원(비급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가 소화성궤양으로 인해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 동안 소화성궤양에 대해서 경구 투약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그 투약시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화성궤양의 치료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강진사랑병원에 입원한 동안 소화성궤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기간 중 부수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입원치료 중 부수적으로 소화성궤양의 치료를 한 경우 그것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